

# 06 4대 보험 가입대상 및 요율

구분	고용보험 (1588-0075)	건강보험 (1577-1000)	국민연금 (1355)	산재보험 (1588-0075)
가입 대상	<b>대원칙 →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무조건 의무 가입</b> (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생계형 근로자가 아닌 학생의 경우 고용, 건강,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됨)			
근로자 연령제한	18세 이상 ~ 65세 미만	무조건 가입대상	18세 이상 ~ 60세 미만	무조건 가입대상
산정 기준	총 급여액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액 차감한 금액 (보수총액)			
납부일자	매월 10일 (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여 각 사업장으로 고지서 발송) <b>2011년부터 통합징수</b>			
일용 근로자	<p>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(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)미만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.</p> <p>다만                      생업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는 자 중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이상 고용된 자와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                    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이라도 고용보험 적용</p>	<p>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제외.                      다만,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아 가입 대상</p> <p>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(주당 평균 15시간)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.                      다만,                      해당 단시간 근무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원칙.</p>	<p><b>파트타임 근무자 및 일용직 모두 가입대상</b></p>	

※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## ◎ 4대 보험료 요율 (2011년 12월 1일 현재)

<기준 : 보수총액>

구분	근로자 부담율(%)		사용자 부담율(%)		합 계(%)	
	'11.1.1 이후	'12. 1. 1. 이후	'11.1.1 이후	'12. 1. 1. 이후	현재	'12. 1. 1.이후
건강보험료	2.820	2.90	2.820	2.90	5.64	5.80
장기요양보험료	건강보험료의 6.55		건강보험료의 6.55		0.17	0.379
국민연금	4.5		4.5		9	9
고용보험료	'11.4.1 이전 0.45	'11. 4. 1. 이후 0.55	'11.4.1 이전 0.7	'11. 4. .1 이후 0.8	현재 1.15	'12. 1. 1.이후 1.35
산재보험료	-		전액부담(업종에 따라 다름)		-	-
<b>합 계</b>					<b>약 16.36</b>	<b>약 16.529</b>

※ 보수총액 : 총 급여액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액 차감한 금액

※ 고용 보험의 경우 2011년부터 임금총액(비과세 포함)에서 보수총액(비과세 제외)으로 기준금액이 변동.

※ **지역가입자 보험료**는 가입자의 소득, 재산,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참작하여 보험료가 산정됨.

최저임금(2011년)	▪ 시급 : 4,320원	▪ 일급 : 34,560원(8시간 기준)
최저임금(2012년)	▪ 시급 : 4,580원	▪ 일급 : 36,640원(8시간 기준)